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성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396 발의연월일: 2025. 2. 25.

발 의 자:정성호·김문수·김동아

김정호 • 최기상 • 주철현

임미애 • 이연희 • 안규백

윤후덕 · 송기헌 · 김남희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규모 신규 방위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사업 착수 이전에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점검하는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신규 방위사업은 그 특성상 최소 수천 억원에서 수조 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됨에도 그 사업타당성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인 예산심의가 심도있게 진행되지 못 한다는 지적이 있음. 이는 「국가재정법」에서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일반 국가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 도록 규정한 것과 비교되는 것임.

이에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사업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되, 고도

의 기밀보호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비공개하거나 요약하여 제출 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 14조의2제2항 신설). 법률 제 호

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3항"을 "제4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"제3항"을 "제4항"으로 한다.

②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국가안보와 무기체계 및 핵심 기술 등에 관한 고도의 기밀 보호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 용을 비공개하거나 요약하여 제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의2(사업타당성조사) ①	제14조의2(사업타당성조사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
	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타당성
	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
	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
	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
	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국가안보
	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등에
	관한 고도의 기밀 보호가 필요
	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
	비공개하거나 요약하여 제출할
	<u>수 있다.</u>
<u>②</u> · <u>③</u> (생 략)	<u>③</u> · <u>④</u> (현행 제2항 및 제3
	항과 같음)
④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	<u>⑤</u>
장은 <u>제3항</u> 에 따른 연구수행을	<u>제4항</u>
위하여 수행기관과 협약을 체	
결하여 연구의 수행에 드는 비	
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	
수 있다.	
⑤ 제1항에 따른 사업타당성조	<u>⑥</u>
사의 대상사업・선정기준・조	

사방법·절차 및 <u>제3항</u> 에 따른	
수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	
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.	